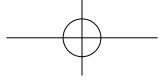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속 노동자를 위한 작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증지권, 이렇게 쓰자

펴낸곳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펴낸이 :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증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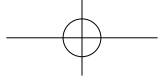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펴낸날 : 2016년 11월 1일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 : 02-324-8633

이메일 : laborr@jinbo.net

홈페이지 : www.kilsh.or.kr



글순서

업 중 지 권 이 령 게 쓰 자

●
작업중지권이란? | 5

●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 9

1.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지침 | 12
2. 업종별 작업중지 사례 | 14
3. 공통 작업중지 사례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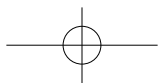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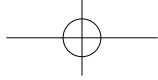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 보자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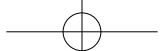
1.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 32
2.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 41
3. 작업중지가 어려울 때 | 48

●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어떻게 할까? | 53

1. 산안법 26조를 넘어선 단체협약을 | 54
2. 작업중지권 모범 단체협약안 | 60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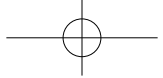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작업중지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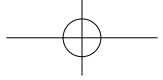
작업중지권이란?

말 그대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뜻합니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소극적인 수단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고,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악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6

인간이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피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위험을 인지한다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능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에 대해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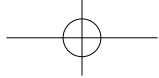
물론 작업을 중지하면 생산에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책임은 기업주, 자본에게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누군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위험한 상황이란 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비, 사고 발생 시 처리 모두 기본적으로 자본의 책임입니다.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관계에서 노동자에게 노동력제공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제공의무뿐만 아니라 안전배려의무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전문개정 2009.2.6.>

제26조 (작업중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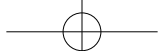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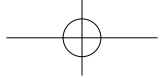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26조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1.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지침 | 12
2. 업종별 작업중지 사례 | 14
3. 공통 작업중지 사례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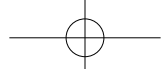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사용해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이 무엇인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의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 회의를 요구할 것인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도, 다른 한편 노사 합의사항으로도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사실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매우 주관적이며,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거꾸로 말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수적인 안전보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일부 획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업종마다, 사업장마다, 작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확인하고, 짚어봐야 할 법적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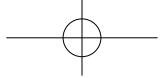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사고 원인이나 사고 자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단의 의미도 있고, 재해의 원인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이 공유하고 곧바로 대책을 토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지침

2010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유해위험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 업무처리 지침'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의 대상과 범위', '작업중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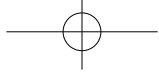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대상은 법제도가 허용하는 최소의 기준과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현장에서 해당작업이 작업중지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장에는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유해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제도는 허용가능한 최소만을 그 기준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대응에 활용합니다.

12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작업중지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대상작업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활동가들도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업을 중지해야 할 때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유해위험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업무처리 지침 대상작업 선정기준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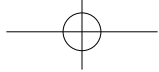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 ①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
- ②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방호조치가 안된 위험기계·기구의 작동으로 주변에서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주변 근로자에게 재해위험이 미미한 경우는 당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사용중지만 명령
- ③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분야

- ④ 추락·붕괴·충돌·전도재해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
- ⑤ 안전조치가 안된 화학설비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화재·폭발·유독물 누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감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
- ⑦ 기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중량물·하역·운반 등 작업

보건분야

- ⑧ 안전기준 미준수 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석면해체·제거작업
- ⑨ 안전조치 미실시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 ⑩ 작업환경 개선시설 미설치 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허용·노출기준 초과 작업
- ⑪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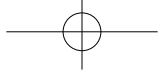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업종별 작업중지 사례

1) 완성사, 부품사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 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호장치를 해체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중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기구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해 놓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작업 중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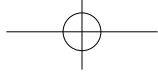
사례

K사 : 로봇 안전장치 꺼 놓아 작업 중지

2015년 2월 5일 14시 10분경 이 회사 노동조합 노안부장은 현장 안전 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 「CAC 언로딩기의 산업용 로봇」이 오작동으로 인해 멈춘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후 작업자는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도어를 열고 로봇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는데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다 열린 도어를 건드려 도어가 닫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노안부장은 바로 작업 중지를 시키고 회사 측 안전관리담당자를 불러 작업자의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도어 및 안전장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는 특별 안전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실시한 것으로 거짓 서명을 하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로봇의 안전장치 센서부위에 자석과 테이프가 부착되어 안정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도어가 닫히면 별도의 리셋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즉, 로봇 펜스 안에서 불량 제품을 꺼내거나 고장이나 수리, 점검 중에 누군가 실수로 도어를 닫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작업 중지 6시간 만에 임시 산보위가 열려, ▲로봇관련 해당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로봇관련 전 공정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수행 방해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작성에 따른 해당자 징계 등을 합의하고,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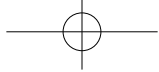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2) 제철, 조선 : 난간 미설치 관련 사례

추락 위험이 있는데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조치가 된 이후 작업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노동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는 통로 설치, 계단의 난간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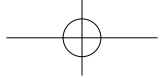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30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한 제철공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추락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추락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안전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사고에서도, 만일 제대로 안전 난간이 설치되고 추락 방지 조치가 완비된 후 작업할 수 있었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

안전난간 설치 안 돼 발생한 사망 사고

2015년 4월 3일, 인천 H제철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쇳물이 담긴 분배시설에 추락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작업장에서 쇳물을 쇳물분배기 주입구에 쏟아붓는 작업을 하다가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사고가 난 시설에 1500~2000도가량의 쇳물이 담겨 있어 이씨의 주검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여년 경력의 정규직인 이씨는 제강공정을 통해 나온 쇳물로 철강 완제품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기계장치인 연주설비를 가동하는 일을 맡아왔다.

당시 사망 사고를 조사한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방지 조치 미비

산업안전법(이하 법) 제23조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위반,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 가능성.

② 작업장 바닥에 쇳물과 철분진이 깔려있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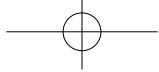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법 제 23조 안전조치, 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위반 가능성.

③ 작업공간에 각종 호수와 배선 등이 널려 있음

법 제23조 안전조치,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위반 가능성.

④ 작업장 적정조도를 유지하지 않음

법 제23조, 규칙 제8조 조도 위반 가능성.



3) 제철, 완성차, 부품사 : 용융고열물의 폭발 사고와 작업 중지

제철소 용광로의 쇳물 뿐 아니라, 엔진 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주물 작업에서 쓰이는 광물이 녹아있는 고열의 물질을 ‘용융고열물’이라 합니다. 이 금속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한 피트에 물이 고이는 경우, 용융물의 고열에 의해 순식간에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령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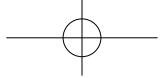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사례

더 큰 사고를 막은 H자동차 소재공장 작업중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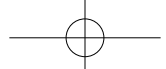
2014년 4월 21일 H자동차 소재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소재부용해라인에서 용융고열물을 옮기는 래들이 파손되었다. 래들이 파손되는 경우 피트(병커)에 래들을 부어서 식혀서 버리도록 돼 있었는데, 이



피트를 평소에 관리하지 않아, 피트 내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다. 6톤 정도 쇧물을 부었더니 피트 내에 고여 있던 물이 기화하면서 폭발했다. 회사측에서는 용해로 4개 중 4호기에서 사고가 났으니 나머지 3개 용해로는 출탕을 하겠다고 요구했다. 출탕을 중단하면 쇧물이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어 막대한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방관은 폭발로 인해 위험하고, 안전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해로 쇧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의원이 방송으로 라인에 있는 인원 모두에게 당장 대피하도록 했다. 소재공장은 작업환경이 위험하여, 2차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큰 사고라고 판단해서 임시산보위가 소집되었다. 노조 신고로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와, 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붙이고 갔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팩스로 사고 난 4호기 빼고는 작업하라고 연락이 오고, 사측에서도 구사대 50명을 동원해 작업에 나서지 않으면 지시불이행과 무단이탈로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왕좌왕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은 작업 중지를 지속하라고 했다. 안전 확인이 되기 전에 그대로 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조합원들이 조합 지침에 따라 작업에 나서지 않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결국, 3일 동안 작업을 멈추고 현장 점검을 했더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피트도 모두 지하수가 고여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에 따라 용기보수, 비상벨 설치, 안전시설 추가설치와 외부기관 안전실사까지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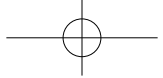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4) 조선 : 밀폐공간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620조 (환기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가 부족해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공간 내에 잔여 가스가 고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작업 전이나 작업 중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폐공간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한 이런 조처들은 무시되기 일쑤고, 이로 인해 한 해에도 여러 명이 밀폐공간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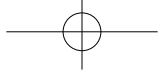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사례

가스농도 측정 없이 작업하다, 6명 사망한 폭발사고 사례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는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하여 집수조에 축적된다고 한다. 이 인화성 가스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나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하다 불꽃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작업 시작 전 가스 농도 측정 등 공기 상태 평가가 진행된 뒤에야만 작업을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고 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294건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치 내용을 보면,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 사용중지 조치가 있습니다. 또 방폭용(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을 적발하고 사법조치(책임자인 사법주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행하는 것)했으며,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과 관련해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68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공통 작업중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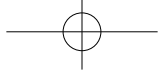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 작업중지근거를 써야 할 때

1)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와 작업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관련 근로감독관 작업 중지 사유

-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작업기준을 미 준수한 경우
- 법 제3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5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초과 작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작업하는 경우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발암물질인 것이 알려져, 현재 국내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고, 이미 사용된 석면 제품이나 석면 건축 자재를 철거하는 경우 석면 전



문 해체 기관이 엄격한 관리 하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8조의 4, 제38조의 5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 조사, 해체 방법, 해체 주체와 해체 시 환경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 시설 해체 작업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공장 설비를 해체하는 경우는 어떤 사업장에서나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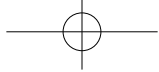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한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석면 자재가 일부 드러났는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규정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며 조치가 될 때까지 특근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석면 함유 물질 정리작업 강요 사례

24

회사 내 낡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붕까지 타 건물은 상당히 파손되었다. 지붕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고, 소방서에서 불을 진화하기 위해 천장을 깨야 했기 때문에 진화된 후에도 현장에 깨진 슬레이트가 마구 흩어지게 되었다. 다음 날 담당과장이 보전 쪽 직원들을 동원해 현장 정리작업을 시켰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아무 보호구 없이, 일반 직원이 단순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은 석면이 발암물질이니, 밀폐를 한 상황에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업체를 불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주말에 조치를 취하는 동안 특근을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대로 해야 한다고 회사를 압박하여 조치를 이루어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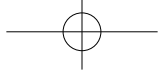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2) 환기 시설 보수 작업 중 작업 중지

특히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도, 환기 시설이 고장났을 때라든지 환기·배기·급기시설을 보수하는 사이에 사업장 내 기본적인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 중 무엇이 됐든, 환풍기가 고장 났거나 냄새가 심해서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관리가 잘 되더라도, 물질을 엮지르거나 누출된 경우, 환기장치 등이 고장난 경우 등 일시적으로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해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업안전기준을 써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보건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자격 면허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없는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3항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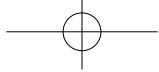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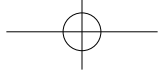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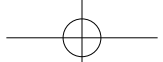
1. 고압실 내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



- 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등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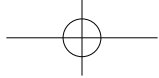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 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



- 하인 증기보일러
-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시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총 16시간의 특별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중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최초 작업 종사 전에 시행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작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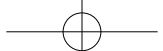
20대 청년 4명이 실명한 메탄올 중독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탄올은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반드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며, 4시간 이상을 반드시 최초 작업 종사 전에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박 겉핥기, 면피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만듭시다.



사례

특별안전교육 없이 로봇 작동시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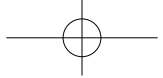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한 사업장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자, 작업을 중지할만한 위험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무직·관리직 노동자들을 긴급 투입해 로봇 작업을 시켰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로봇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고,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결국 작업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1.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 32
2.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 41
3. 작업중지가 어려울 때 | 48



1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이제 실제 작업중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대응의 절차를 알아보시다.

노동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현장 조치입니다. (‘언제 작업중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9쪽 작업중지를 써야 할 때 꼭지 참고) 그렇다면, 예방적 차원의 작업중지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32





조합원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 하는 점입니다. 당장 위험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마다 노동조합의 유무, 노조의 조직력 수준, 사측과의 일상적인 관계 등이 있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있고 튼튼한', '힘있는' 노동조합의 노동자만 건강이나 생명이 귀하거나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 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공정의 전문가는 바로 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구보다 해당 공정의 작업자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상태의 기계, 기구, 설비의 트러블과 오작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도 해당 작업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급박한 위험' 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작업자 스스로입니다. 내 공정의 전문가는 바로 나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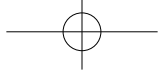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33

▶ Step 0

● 현장의 위험을 알자

작업 중지권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위험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미리 인지하



고, 이 때 작업중지를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 화학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그 증상을 일상적인 노안 교육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Step 1

● 위험 징후를 감지했다면 바로 작업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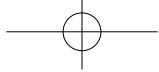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위험징후를 감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작업중지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기계, 기구, 설비의 가동이 평소와 다른 상태를 보이거나, 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흙이나 가스가 분출될 때, 안전보건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할 때 등 위험징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위험징후를 감지했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작업중지 실시를 이유로 관리자가 작업재개를 종용하거나 사후적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후적 조치를 위한 개선과 대책마련, 작업재개 시점을 둘러싼 마찰이었고, 작업자가 실시한 작업중지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자신있게 작업중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 Step 2

● 작업중지 후 무조건 알린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중지를 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실행한 조치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



를 알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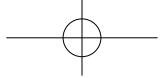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따라서 작업중지 후 즉각적으로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흙이나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공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고함을 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작업공간과 장소의 여건에 따라 모든 작업자들의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 경보 등이 작동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Step 3

● 상급자와 노동조합에 즉각 통보하기

작업중지를 했다면 상황에 대해 회사측의 상급자(지반장, 조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노동조합에 이를 알립니다. (위험을 감지했으나, 작업중지를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직상급자와 노동조합에 즉각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중지 당사자가 여력이 없다면, 해당구역의 대의원을 통해서 상황이 노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변 동료들 통해 노동조합에 상황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파해야, 예방차원의 작업중지가 사후에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작업중지를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집단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면하는 현장의 유해위험은 전체 조합원의 문제이며, 현장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대의원이나 상집간부

대의원이나 상집 간부가 작업자의 작업중지 상황을 확인하거나, 단행되지 않고 있는 조치에 개입하여 직접 작업중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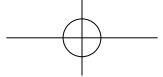
대의원이나 상집 간부가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조합원의 대표이다

대의원과 상집 간부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뜻과 의지를 대표한다는 것은 백번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작업 중지 상황에서 대의원과 상집 간부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개인 혹은 몇몇 조합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생명과 건강, 목숨을 지킨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나는 사측의 보호와 예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노동자의 대표이다

작업중지는 노동자를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에서 보호하고 예방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주와 정부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초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측의 기본적인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 Step 1

● 상황을 인식했다면, 즉각적인 작업중지 실시

작업자의 연락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했다면, 바로 현장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위험 상황을 확인했다면 즉각 작업중지를 실시합니다.

▶ Step 2

● 작업중지의 책임이 사측에게 있음을 똑똑히 주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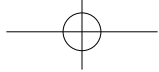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작업중지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각종 유해위험이 현장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는 사측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대의원이나 상집 간부가 작업중지를 직접 단행하거나, 현장 작업자의 연락에 의해 작업중지 조치에 개입하게 될 때에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측에게 있음을 똑똑히 주지시키고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 Step 3

● 전 공장에 작업중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작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면, 작업중지는 제한된 기계기구나 설비, 라인, 생산공장·구역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이나 작업자들은 무슨 일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중지가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왜 작업중지가 발생했는지를 적극적



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작업중지 상황이 있더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공정이나 동종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노사 합동 안전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재해 예방과 관리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손실만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적인 보호와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당사자로서의 참여, '예방적 차원의 작업중지'의 필요성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5무재해우수사례집>에 담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례'를 보면, '아주 작은 유해·위험요인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전현장의 동종 및 유사작업 모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다'며 모범 사례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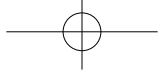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사례

작은 유해위험요인도 전 현장 유사작업 모두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2015무재해우수사례집]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례 중

아주 작은 유해·위험요인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전현장의 동종 및 유사작업 모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만 작업재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Safety Alarm이 발령된다. 그리고 동종·유사작업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강 건너 불'의 경우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함이다. ... 또



직원들은 누구든 안전위해요소 및 위험작업을 발견했을 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알리고 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 먼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위험을 제거하며 잠재위험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Step 4

●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협의 요구

작업중지가 실시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한 조치의 이행과 재발방지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작업중지의 범위에 따라 해당구역 대의원과의 노사협의나 임시 산보위 등으로 노사공동 논의를 정식화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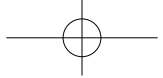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Step 5

● 조합원 요구 수렴

작업중지 사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바로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예방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문제 발견, 개선 방법 등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도 바로 해당 작업자와 작업중지 범위에 속해있는 조합원이나 작업자들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조합원의 참여가 힘이 된다는 것은 작업중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장의 작업중지 사안만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했던 유사사고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조치와 이행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 Step 6

● 대책 마련을 위한 사측과의 논의

사측은 당장의 작업재개 여부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조치가 기본이 되어야 작업재개가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태도로 단호하게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논의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이를 통해 관련 조치의 이행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합니다.

▶ Ste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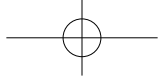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 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 및 안전보건 교육

대책 마련 논의가 마무리 됐다면, 결과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 Step 8

● 재발이 없도록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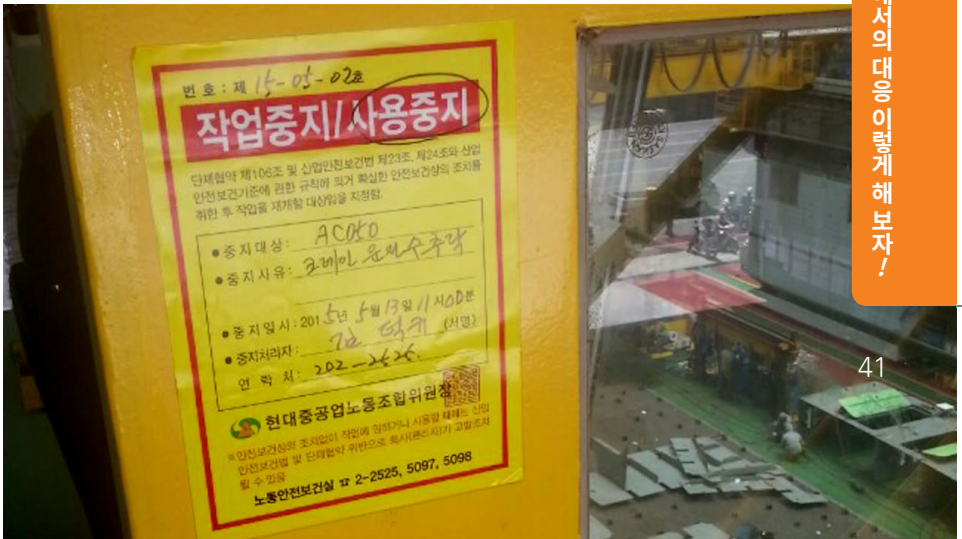
한번 발생한 사고나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에도 점검 활동이 지속돼야 합니다. 회사측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지키는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지, 조합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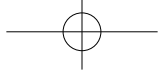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2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 보자!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반복되는 재해로 또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 Step 1

●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 합니다. 재해자 수습을 위해서도 작업중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동일 재해의 반복을 막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위험에 의한 2차 사고를 막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중지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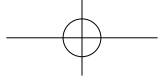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로 한정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해의 경중을 떠나 예방대책 마련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는 큰 사고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합니다!

42

▶ Step 2

● 재해를 즉각 알리고, 재해자 수습에 동참한다

재해를 즉각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해의 은폐를 막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모두에게 알려져야만, 수습과정이나 이후 과정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즉각 회사 측과 노동조합에 알립니다.



▶▶▶ Step 3

● 사고현장에 대한 기록 남기기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재해 현장과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 Step 4

● 사고현장 보존에 조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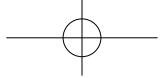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안타깝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사측은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자 수습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수습하고, 작업을 재개하도록 종용합니다.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 Step 5

●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안 논의 동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조의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합니다.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대의원이나 상집간부

재해발생시 작업중지와 관련한 대의원이나 상집간부의 역할은 위험상황 인지시 작업중지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Step 1

● 재해자 응급조치

재해의 경중을 떠나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치료를 돕는 것입니다.

▶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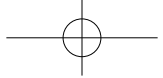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측에게 있음을 주지시킨다

안전사고는 작업자의 과실을 떠나 관리감독이나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킨 상태로, 이 문제에 대응합니다.

▶ Step 3

●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찾기

사고원인에 대한 노사공동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측이 작업재개를 위해 시도하는 일체의 사고현장 수습 등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동료 작업자로부터 정황을 파악하고, 만일에 대비한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Step 4

● 전 공장으로 사고를 알리고 전파한다

사고 전파 과정에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상황을 전달받지 않은 인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Step 5

● 사측의 산재발생 사고 신고 강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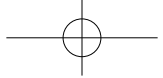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사측을 강제하고, 사측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회사의 산재은폐를 막아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역할과 정부의 관리감독의 소홀, 관련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Step 6

● 노사공동의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의 속성을 막고, 이를 분석 검토하는 것은 동종재해와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필요합니다.

사고조사팀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칫 재해자 개인의 과실로 덧씌우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고원인·대응 적절성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하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 가이드북>

■ 사고조사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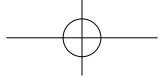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 사고 발생 시 조사팀을 구성, 신속히(적어도 24시 내) 사고조사
- 조사팀은 설비 및 시설을 잘 알고, 사고조사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등 2명 이상으로 구성
- 도급업체가 관련된 경우 도급업체 담당자를 조사팀에 포함

■ 사고 조사방법

- 사고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손상, 손실되지 않도록 현장 보존
- 현장 내 남아있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수집
- 사고발생 당시의 근로자, 목격자들로부터 사고 상황 정보 입수

■ 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다음 사항을 포함되도록 작성)

- 사고조사팀 전원의 소속, 성명 기록 및 서명 날인
- 사고 일시 및 장소
- 사고조사 일시
- 사고유형, 사고물질명과 설비명
- 사고개요와 원인
-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범위 및 경제적 손실비용
- 수행된 비상대응 적절성 검토
- 동종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



▶ Step 7

● 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 및 안전보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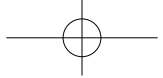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대책 마련 논의가 마무리 됐다면, 결과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전 공장 작업자에게 보고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Step 8

● 재발이 없도록 사후관리

한번 발생한 사고나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에도 점검 활동이 지속돼야 합니다. 회사측이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지키는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지, 조합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응 이렇게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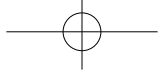


3

작업중지가 어려울 때



위험상황을 인식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노조가 있더라도 작업중지를 둘러싸고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노사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항에 개입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은 현장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제한적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장 작업자가 해당 작업의 가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현장 바깥의 정부기관에 의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노사간의 갈등이나 마찰로 작업중지 사안을 해석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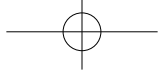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1588-3088 위험상황 신고전화 활용

고용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 노동관서에 연결되는 사업장 ‘위험신고상황실’(대표번호 1588-30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 위험상황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담당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성 사망 등 산업재해의 감소 일환으로 사업장 내 붕괴·화재·폭발 등 위험상황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국대표 신고전화 「1588-3088」로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신고지역의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위험상황신고실 전화로 자동연결되고
- 위험상황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위험상황을 확인한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에서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하며
- 조치완료 후 신고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위험상황 신고전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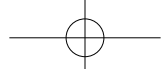
사례 1

A 자동차 부품사

a노안부장은 현장에서 전화를 한통 받았다. ‘일하는데 현장에서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난다’는 작업자의 호소였다. 작업 중에 현장 출입통로 표시를 위해 라인을 새로 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다음날 해의 본사 고위 관계자가 온다는 이유로 페인트 칠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작업장 바로 옆에서 진행되는 페인트 칠로 조합원들은 냄새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a노안부장은 1588-3088 위험상황신고전화를 통해 상황 설명을 하고, 이 작업을 중지시켜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담당감독관은 본인들이 와봐야 알겠다면서, 현장 도착까지는 한 시간 반이나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 시간동안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직접 중지를 시키겠다 하자 담당감독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감독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고, 현장 페인트 칠 담당자, 현장 부소장을 찾아 작업자들이 냄새가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요구를 전달하며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부에서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얘기하자, 페인트칠이 중단됐다.

결국 한시간 반 정도 지나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했고, 문제를 살펴본 후 담당관은 국소배기장치를 할 수 없다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창문을 다 열고 작업자들이 없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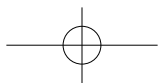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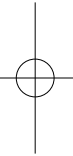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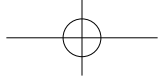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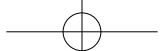
B 제철소

사내하청지회 b노안부장은 제철소 고로(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노)작업 중에 고로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송하는 내경 2m정도의 배관 안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용접작업에 투입됐다. 당시는 잔류가스 배기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b노안 부장은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작업 투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당시 이 문제로 작업투입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다.

작업자들의 판단에는 잔류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에 투입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잔류가스 측정기기를 작업자들이 직접 휴대할 수 없으니, 가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다. 다행히 B제철소에는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망의 문제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던 중이라, 근로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었다. 곧바로, b노안부장은 상주하던 근로감독관을 불러 사측과 함께 이 문제를 확인했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현장에서의 대응 이렇게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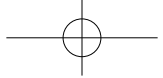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어떻게 할까?

1. 산안법 26조를 넘어선 단체협약을 | 54
2. 모범 작업중지권 단체협약안 | 60



산업안전보건법 26조를 넘어선 단체협약을

... 작업중지권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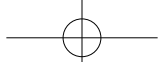
1) 누가 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며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는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주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소속의 여러 지부, 지회에서 작업중지권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없는 단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회에서는 조합 산업안전담당 임원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원에게도 작업중지 요청 권한 혹은 긴급 임시위원회 개최 요구 권한을 부여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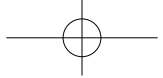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지회도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전체 혹은 위원 중 노사 각 1명)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조합도 있습니다.

아예 ‘노동조합’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 권한에서 나아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조합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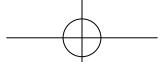
56

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노사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노안부장 혹은 산보위원의 작업중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한 회사에서 비슷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던 2015년 초의 로봇 작업중지 건을 회사가 업무 방해로 고소한 것은 협약에 작업중지권의 주체로 조합 간부나 조합원을 명시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협에서 작업중지권의 주체 폭을 넓혀서 조합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면 사측의 이런 태도 변화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가?

주체의 측면에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폭을 넓혀 노동조합 산업안전 담당 임원이나 산보위원에게도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한 단협을 체결한 지회에서

56



●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어떻게 할까?

도 작업중지의 조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업종 지회들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상태 시정 요청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작업중지권이 사고 발생 이후 처리하는 데에만 사용되거나, 임박한 사고 그 자체로부터 대피하는 것을 넘어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예방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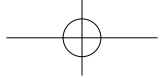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이런 사업장에서는 평상시 노동조합이 안전보건활동으로 현장패트rollers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시설 미비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이에 따라 사측이 안전, 보건 조치를 수립하는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실제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지회는 작업중지 제외 조항 9개를 단협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것보다도 좁은 조건으로 퇴행적 단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을 절대 만들지 못 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지회 단협에는 이런 독소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작업중지 이후 어떻게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중지 이후 조치에 대해서나, 작업을 재개할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회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작업 중지 이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작업중지 이후 노사가 각각 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작업 중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툼, 작업 재개와 관련된 다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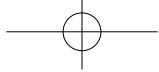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한 지회는 작업중지 이후 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면 그 내용을 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에 대해 산보위 사용자 위원이 이견이 있을 경우는 산보위를 개최하여 작업중지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보위에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심의 의결하고, 회사가 이 조치를 취한 후 노조의 확인 후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작업중지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사측이 '작업중지가 불필요했다'며 징계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은 작업중지를 한 행위를 보호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작업중지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 재개를 위한 조건도 중요합니다. 안전보건조치를 노조가 확인 후에 작업을 재개한다는 항목을 두는 지회들도 많습니다. '산보위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확인을 구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조항이 예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은 없고, 긴급 임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만 있게 돼 있는 지회에서는, 임시 산보위가 작업중지 여부를 심의하고, 작업 중지 결정시 회사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보위원이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보완적인 조항이 있는 셈입니다.

4) 불이익을 어떻게 막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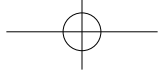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싸움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회 단체협약이 산안법과 똑같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제한적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는 단체협약을

각 지회별 단체협약에서 주체, 작업중지 조건, 작업중지 이후 진행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 활용 정도와 구체적인 상이 실제 달라지도록 만듭니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주체와 조건입니다. 노동자·노동조합·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 요청이 아닌 작업 중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도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하게 예상될 때나 재해가 발생한 이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관계법 위반, 작업자가 위험을 느낄 때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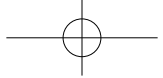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2

모범 작업중지권 단체협약안



모범 작업중지권 단체협약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한다.
- ② 작업자는 재해를 당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③ 작업자는 작업중지나 거부를 한 이후에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단,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회사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중지 지속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번호 : 제 호

작업중지 / 사용중지

단체협약 제 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확실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대상임을 지정함.

● 중지대상 : _____

● 중지 사유 : _____

● 중지 일시 : 년 월 일 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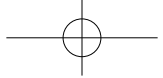
● 중지처리자 : _____

연락처 : _____

* 안전보건상의 조치 없이 작업에 임하거나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회사(관리자)가 고발조치될 수 있음.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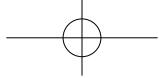
_____)
노동안전보건실(연락처 : _____)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노동 조합 상급단체 연락처입니다. 이 단위들과 신고부터 상황을 공유하면,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부나 산업안전감독관의 대응을 함께 감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함께 압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생한 위험 사건이나 사업주의 대응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노동계와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작업 중지 경험을 널리 알리는 것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문제를 예방하고,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 1588-3088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02-324-8633, laborr@jinbo.net, 카카오톡 ID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 사무실 031-247-863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 사무실 051-816-8633

금속노조 노안실 02-2670-9509 <http://metalunion.kr>

민주노총 노안실 02 2670 9115 kctu@nodong.org

건강한노동세상 032-242-4508 shlaborworld@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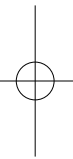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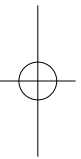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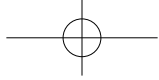
광주노동보건연대 062-524-1175 solar.jinbo.net

노동건강연대 02-469-3976 laborhealthh@hanmail.net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055-267-0489 <http://www.mklabor.or.kr>

울산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052-288-3356 www.ulh.liso.net

일과건강 02-490-2096 www.safedu.org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